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3. .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3일 구청장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1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1회 영등포구의회(임사회) 제1차 위원회(1995년 3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박충희)

가. 제안이유

○현행 제증명 발급 처리에 있어 수입증지 인쇄, 판매, 소인, 직인날인 등 처리과정이 복잡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됨을 개선,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를 사용하여 일괄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입증지의 인쇄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출을 지양함으로써 예산절감 도모

나. 주요골자

-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조항 신설(안 제1조의 2)
- 수입증지 소인방법 단서조항 신설(안 제4조)
-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제4항)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대현)

현행 제증명 발급처리에 있어 수입증지 인쇄, 판매, 소인, 직인날인 등 처리과정이 복잡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행 수입증지 납부규정에 「요금계기복합인증기」를 사용하여 복잡한 처리과정을 계기에 의한 일괄처리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예산절감을 도모코저 현행 조례 제1조 수입증지 납부방법에 가지조로 제1조의 2(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조·항·호 신설하고, 현행 제4조 「수입증지의 소인 방법단서 신설」 및 제5조 제4항에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
----------	-----

제출년월일 : 1995. 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현행 제증명 발급 처리에 있어 수입증지 인쇄, 판매, 소인, 직인날인 등 처리과정이 복잡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됨을 개선,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를 사용하여 일괄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 수입증지의 인쇄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출을 지양함으로써 예산절감 도모

2. 주요골자

-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조항 신설(안 제1조의 2)
 -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계기고유번호
 -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설치 시행방법 고시
- 수입증지 소인방법 단서조항 신설(안 제4조)
 - 계기에 의하여 인증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제4항)

3. 개정근거

- 회계 43161-3354(94. 8. 23.), 시민 01250-2144 (94. 12. 3.)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약 72,000천원(3,000천원×24대=72,000천원)

5. 개정조례안-별 첨

6. 신·구조문 대비표-별 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 2(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구청장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계기고유번호

③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기에 의하여 인증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 제목“(수입증지 취급공무원 판매인지정)”을“(수입증지 취급공무원 계기관 공무원, 판매인지정)”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수입증지 취급공무원,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의 임명과 판매인 지정 및 수입증지의 관리 판매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수입증지의 납부) 생략 (신설)	제1조(수입증지의 납부) (현행과 같음) 제1조의 2(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구청장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계기고유번호
제4조(수입증지의 소인) 수입증지로서 수행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수입증지 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③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증지의 소인)다만, 계기에 의하여 인증된 수입증지는 소인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입증지 취급공무원, 판매인 지정)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임명과 판매인 지정 및 수입증지의 관리 판매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입증지 취급공무원, 계기관리공무원, 판매인지정)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수입증지 취급공무원,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의 임명과 판매인 지정 및 수입증지의 관리, 판매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